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(이만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09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4.

발 의 자 : 이만희 · 서천호 · 김기웅
엄태영 · 이성권 · 이종배
구자근 · 이달희 · 김상훈
이소희 · 권영진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 이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으나, 영화상영관 현장에서 이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는 예방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영화상영관 경영자로 하여금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·녹음·촬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영화상영관 내 무단 녹화·녹음·촬영을 사전에 억제하고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(안 제37조의2 신설).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7조의2(무단 녹화·촬영의 방지 조치)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상영 중인 영화가 무단으로 녹화·녹음·촬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<u>제37조의2(무단 녹화·촬영의 방지 조치) 영화상영관 경영자는 상영 중인 영화가 무단으로 녹화·녹음·촬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